

法 齒 學 에 對 하 여

서울대학교 齒科大學 口腔診斷學敎室
國立科學搜查研究所 法醫學科

金 鍾 悅

2) 屍體檢査 Examination of the body

屍體를 檢査함에 있어서는 屍體檢査 則 檢屍와 解剖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檢屍(Inspection)라 함은 屍體의 外表 所見을 檢査하는 것으로서 檢屍를 通하여 個人識別을 行하며 病死와 變死의 鑑別 死因, 死後經過時間 등을 決定하며 醫師 및 齒科醫師는 檢査結果로 屍體檢査書를 作成하게 된다. 이에 對하여 齒科醫師 自身이 治療하던 患者가 死亡하였을 때 에는 그 生前의 診斷한 바에 依하여 死亡의 原因을 證明하는 文書로서 死亡診斷書를 作成하는데 이때 診療中이던 患者의 死亡한 時間이 最後에 診斷한 때로부터 起算하여 24時間以內라면 다시 診察하지 않고도 死亡診斷書를 交付할 수 있도록 醫藥法 第31條에 規定되어 있다. 그러나 萬一 死亡時間이 最後診察한 後 24時間을 넘었으면 다시 直接檢査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屍體檢査書를 交付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齒科醫師 醫師가 行하는 檢屍는 檢視의 補助行爲의 하나가 되며 檢視는 變死體(Unnatural death)가 있을 때 刑事訴訟法上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의 檢査가 이에 對하여 犯罪의 嫌疑與否를 調査하는 行爲를 말하는 것이다. 檢事는 刑事訴訟法 第222條에 依據 司法 警察官에게 이 處分을 命하기도 한다.

齒科醫師가 檢屍를 行함에 있어서는 一般의인 檢査를 行함은 勿論이거와 其外에도 死體의 皮膚에 殘存하고 있는 齒痕 및 咬傷의 存在與否를 注意깊게 觀察하도록 할 것이며 咬傷이 있는 境遇에는 우선 계일 먼저 그 咬傷이 生前의 것인가? 死後의 것인가를 明確히 하여야 한다. 또 그 咬傷이 사람의 齒牙에 依한 것인가? 動物의 齒牙에 依한 것인가? 를 判定해야 할 때 도 있다. 이 때에는 주로 齒痕의 크기와 齒列弓의 형태를 中心으로 觀察하며 齒痕의 길이와 幅徑도 參考가

된다. 咬痕이 사람의 齒牙에 依한 것으로 判定이 되면 檢査의 順序로서 齒列弓의 形態 齒牙의 幅徑의 크기 齒牙의 配列異常 齒牙의 缺始 奇型齒 또는 充填物補綴物의 種類 特徵等과 咬痕과의 相互關係를 주의하며 齒列痕全體의 狀態 個個의 齒痕의 形態와 크기(長徑, 幅徑, 面積) 各隣接齒痕間의 距離를 精密히 測定하고 寫眞撮影 描寫乃至 記載를 해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身元不明한 白骨死體의 境遇에는 全身의 骨의 諸 所見 特히 頭蓋骨의 크기와 性別의 特徵 頭蓋縫合 四肢骨의 全長과 關節의 癒合狀態 骨髓腔의 所見 骨盤의 크기와 形을 參考하며 齒牙에 있어서는 充填物 補綴物의 所見을 通하여 個人識別上에 重要な 役割을 하도록 한다. 檢屍만으로서 死因이 究明되면 至極히 多行한 일이나 그렇지 못한 境遇에는 그 屍體에 對하여 法醫 解剖를 施行하게 된다. 人體解剖는 그 目的에 따라서 人體構造를 研究하기 爲한 正常系統解剖, 入院中에 死亡한 者에 對하여 疾病狀態를 究明하기 爲한 病理解剖 및 法醫解剖로서 大別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施行하게 되는 解剖는 法醫解剖인 것이다. 法醫解剖란 그 死因이 不明한 變死體 또는 犯罪와 關係있는 屍體에 對해서 死因 自他殺의 鑑別 損傷의 部位 程度 形狀 發器의 種類 및 그 使用法 死後經過時間의 推定에 必要한 事項 등을 檢査하여 犯罪事實을 立證하고 犯行과 死因과의 關係를 明白히 하는 등 法律上 必要한 醫學的 事項을 究明하기 爲하여 行하는 解剖를 말하는 것으로서 死因이 不明한 變死體에 對해 死因을 明確히 함으로서 犯罪에 起因된 死亡의 與否를 判斷하기 爲한 目的下에 實施하는 行政解剖와 犯罪와 關係가 있는 死體에 對하여 行하는 司法解剖로 分類된다. 法醫解剖는 刑事訴訟法 第169條 및 第215條 第222條 第221條에 依據 判事의 命에 依하여 또는 判事의 押收搜索令狀에 依하여 檢事 或은

司法警察官이 鑑定囑託書를 添付해서 醫師에게 依頼하게 된다. 따라서 法醫解剖에 當하는 齒科醫師로서는 囑託者로부터 鑑定囑託書를 받은 後 着手하여야 한다. 그리고 屍體를 檢屍한 境遇에는 屍體檢案書를 屍體를 解剖한 境遇에는 鑑定書를 作成하여 依頼官署에 提出하여야 하는 것이다. 法醫解剖에 際하여는 鑑定命令者 또는 囑託者가 要求하는 事項 即 鑑定事項을 中心으로 하여 解剖를 進行시켜야 할 것이며 그 術式에 關하여는 特別한 規定은 없고 一般病理解剖의 術式에 準하면 될 것이나 病理解剖와는 目的이 相異함으로 그 檢査의 着眼點에 있어서도 差異가 있음을 注意하여야 할 것이다. 即 病理解剖에서는 別로 必要를 느끼지 않는 所見 例를 들면 外表檢査에서 發見한 些少한 表皮剝脫 皮下 出血 等이 法醫 解剖上으로는 極히 重要한 所見이 될 수 있음을 銘心하여 詳細한 觀察을 實施할 일 이다. 그리고 法醫解剖는 全身解剖라야 하며 局所解剖만으로 死因을 斷定해서는 안 될 일로서 頭腔 胸腔 및 腹腔의 3腔解剖는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境遇에 따라서는 그밖의 部分도 開檢하여야 한다. 勿論 肉眼의 檢査만으로 判定키 困難할 때에는 解剖時에 臟器의 一部를 彩取하여 組織標本을 作成 檢鏡하고 血清學的 및 細菌學的의 檢査 乃至 理化學的의 檢査를 施行하여야 될 때도 있다 鑑定人이 되는 齒科醫師, 醫師는 事件의 概要를 仔細히 把握하여 說或 要求가 없더라도 事件의 搜查 起訴 公訴維持 等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은 모두 檢査를 行하거나 또는 何時라도 檢査할 수 있도록 證據材料를 保存해 두어야 한다.

3) 物體檢査 Examination of objects

物體檢査에는 人體의 一部 또는 그로부터 由來되는 것 乃至 犯罪構成에 따라 證據物로 採擇되는 日常生活用品等 여러가지가 包含된다. 齒科法醫學上 檢査의 對象이 되는 物體는 骨片 齒牙 齒石 毛髮 爪 齒痕이 남아 있는 物體 血液 唾液이 附着되어 있는 物體 그 외의 義齒等을 列舉할 수 있다.

4) 現場檢査 Examination of scenes

屍體가 發見된 場所 또는 犯罪現場에 對하여 檢査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一般적으로는 搜查官이 할 일이나 萬一醫學上 知識이 必要한 境遇에는 醫師도 함께 立會하여 法醫學의 見地에서 死體의 位置 着衣狀態 死體周圍의 外的 條件等을 觀察한다. 現場에서 觀察함에 있어서는 物的觀察法 犯罪心理의 觀察法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作爲와 擬裝을 看破하기 爲하여 어떤 物件이 어떤 狀態下에 他物件과 어떤 關係로 存在하는

가를 注意하게 되며 現場에 露出되고 있는 心理의 一部를 看破하도록 努力하여야 하는 것이다.

5) 書類檢査

齒科醫師의 診療簿 診斷書 X-線寫眞等을 審査하여 診療過誤의 有無에 對한 鑑定을 行하거나 境遇에 따라서는 다른 鑑定人이 作成한 鑑定書類에 對하여 記錄上의 再鑑定을 行하게 되는 境遇도 있다.

鑑定(Expert evidence)이란 訴訟의 第3者가 特別한 知識經驗에 屬하는 法則 또는 이에 基盤을 둔 原理에 立脚하여 具體的 事實의 判斷을 하는 것으로서 醫學에 關係되는 鑑定을 必要로하는 境遇에는 專門인 醫學知識을 가진 經驗있는 醫師, 齒科醫師에게 鑑定人이 될 것을 命하거나 委囑하게 된다. 鑑定人은 法院으로부터 指示 또는 檢査 또는 司法警察官의 委囑에 依한 鑑定事項에 對하여 그 鑑定結果를 記載한 書類로서의 鑑定書를 發行하게 되는데 그 鑑定結果가 사람의 生命, 自由, 名譽財產 등 人權에 미치는 影響이 至大하므로 적어도 鑑定에 從事하게 될 때에는 어떠한 事態에 對하여도 對應할 수 있는 學問 知識 經驗을 具備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鑑定人이 鑑定에 從事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徹頭徹尾 確實한 科學的 確證에 立脚하여야 할 것이며 萬一 最後의 斷案을 自身있게 내리기 困難한 境遇에는 科學的 證據가 없는 臆測으로 함부로 鑑定書를 作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斷定할 수 없다. 라고 記載하는 것이 올바른 態度라고 보는 것이다. 刑事訴訟法 第171條의 規定을 보면 ① 鑑定의 經過와 結果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書面으로 提出하게 하여야 한다. 鑑定人이 數人일 때에는 各各 또는 共同으로 提出하게 할 수 있다. 鑑定의 結果에는 그 判斷의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④ 必要한 때에는 鑑定人에게 說明하게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鑑定關係의 法條文이 許多하므로 鑑定人이 될 境遇에는 그 때 마다 該當 法條文을 參考하여야 할 것이다. 鑑定書의 書式에 있어서는 行政上의 目的에 쓰이는 死亡診斷書 屍體檢案書 등의 記載方式에 關하여는 醫療法 施行規則에 詳細히 規定하고 있으나 司法上의 目的에 依하여 要求되는 檢案書 및 鑑定書는 書式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며 따라서 그 要求形式에 相應토록 記載하면 되고 그 內容도 또한 그 要求에 따라 適切히 記載하면 된다. 그러나 大體로 鑑定書는 慣習上 다음과 같은 內容으로써 꾸며진다.

(다음호는 감정서에 대하여 기술함)